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4. 7. 4.>

수출수산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시설	시설의 유형 [] 양식시설 [] 가공시설 [] 보관시설				
	소재지				
	품종			수출희망국가	
	시설내역				
	시설면적(㎡)	수조, 가공실 또는 보관실 수(개)	연평균 수출수산물 양식·가공·보관량	비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15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출수산생물 양식 현황(양식시설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 평면도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